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3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III. 경영참고사항 .....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	6
나. 회사의 현황 .....	7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0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0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선임.....	44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46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46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47
<input type="checkbox"/>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47
※ 참고사항.....	81

#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 년 03 월 09 일

회 사 명 : 디와이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지 현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62번길 36(남촌동)  
(전 화) 032 - 810 - 4100  
(홈페이지) <https://www.d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실장 (성 명) 김 진 호  
(전 화) 032 - 810 - 4100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2기 정기주주총회)

1. 일시 : 2020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2. 장소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남촌동) 당사 5층 시청각실

##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42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당해법인과 거래내역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비고
감사	이창순	(현) 디와이 감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선임

제3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임원퇴직금지규정 일부 변경의 건

제6호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은 당사홈페이지(<https://www.dy.c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국민은행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6. 기타

가. "경영참고사항" 및 "주주총회목적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주총장 폐쇄가 결정될 경우, 장소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겠습니다.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형모 (출석률: 88%)
			찬 반 여 부
1	2019.01.21	- 경영임원 보수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 사내 일부 규정의 개정의 건	-
2	2019.02.07	- 제41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 제41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3	2019.03.07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4	2019.03.22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등기임원 보수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 이사(등기감원)의 타회사 임원 겸임 승인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찬성
5	2019.05.20	- DY AMERICA 자본금 증자의 건	찬성
6	2019.06.24	- 경영임원 신규 선임의 건 - 경영임원 보수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찬성
7	2019.07.22	- 퇴직임원의 자문역 운영규칙 개정의 건	찬성
8	2019.10.21	- 지배인 신규 선임의 건	찬성
9	2020.01.20	- 경영임원 신규 선임의 건 - 경영임원 보수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불참
10	2020.02.12	- 제42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 제42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찬성
11	2020.03.02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DY POWER 주식 취득의 건	찬성

(\*1) 이형모 사외이사는 2019년 0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됨.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900	19	19	-

(\*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금액임.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채무보증	DY AMERICA Inc.	2019.11.01~2024.11.01	81	3.53%

- (\*1) 단일 거래금액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2,291억원)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함.
- (\*2) 거래기간은 채무보증 계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임.
- (\*3) 상기 거래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환율인 USD 1,157.80원을 적용한 금액임.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당해 사업연도중 발생한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기일 전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당사(분할후존속회사)와 디와이파워주식회사(인적분할신설회사) 및 디와이오토주식회사(물적분할신설회사)가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분할승계된 채무보증건은 없습니다.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 지주사업

##### 1. 산업의 특성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며,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일정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부채비율은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제한의 준수여부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 DY사업부문

##### 1. 산업의 특성

세차기 부문은 차량등록 및 운영 여부, 주유소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적 제약과 설치 시 공사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류사업 경기 흐름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차량과 연관한 장비의 장착을 통해 운송 및 시공, 건설현장 등에서 운반기계와 건설기계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윤 및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골프장 수익사업으로 골프카의 관리수준에 따라 내구연한이 차이가 나는 산업으로 신규시장은 일괄구매로 진행되나 교체시에는 일부교체 전체교체중에 골프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골프장 매출에 따라 시장규모가 달라지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세차기 부문은 2019년 12월말 현재 국내의주유소는 약 11,474개소, 충전소는 약 2,50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주유소 충전사업장간의 경쟁 과다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대체에너지 대두 및 연비와 성능을 향상한 신차 출시로 세차기 부문은 현재와 같은 규모의 성장 및 유지가 예상 됩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경기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특성상 관련 경기의 변동에 따라 성장성에 영향이 있지만, 기술의 발전 및 편의성의 추구, 인력 절감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골프카 부문은 단기적으로 신규골프장 개장과 연계되어 수요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체수요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세차기 부문은 교체와 신설 수요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시장은 현재 포화상태로 신규투자가 위축되는 반면 교체 시장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투자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경기의 등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변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의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주로 골프장 성수기에 구매가 진행되나 골프장의 경영여건에 따라 구매패턴이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4. 계절성

세차기 부문은 계절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며, 2분기는 투자 활성화로 인한 증가, 3분기는 기후요인에 따른 감소, 4분기는 투자 회복세와 연동하여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특장차 부문은 동절기등의 장비가동시간 감소에 따른 계절적 영향은 있으나 비교적 고른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봄과 가을 시즌에 성수기를 맞이하는 골프의 계절적 특성과 맞물려 봄, 가을 시즌에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계절적수요 변동의 특성이 있지만 골프장의 경영여건에 따라 계절적인 변동성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5. 시장의 안정성

세차기 부문은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로 인하여 신규 수요 창출보다 교체 또는 틈새 수요로써 현상유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업, 운송업 등의 발전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골프카 부문은 시장 경기에 따른 신규 골프장 감소로 신규수요는 감소했으나 기존 골프장의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되어 현재까지의 시장규모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6. 경쟁상황

세차기 부문은 한정된 국내 시장 여건과 투자 위축까지 겹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으며, 수익구조 또한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해외시장 역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고객요구에 만족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우수한 품질로써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점진적으로 시장을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장차 부문은 제품 특성상 신규 아이템의 개발과 시장 진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국내시장은 3개 내외의 기업이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외시장도 이와 유사하게 적은 수의 선점기업이 경쟁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골프카 부문은 2강 3약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품질을 앞세운 수입 브랜드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 7. 경쟁요소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단점

세차기 부문은 무형적인 요소로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존중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투명한 기업이미지와 안정적인 재무구조하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장점이며, 유형적으로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제품 내구성 및 전국서비스망을 구축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국내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조건의 탄력적 접근 애로 및 신시장 개척이라 하겠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제품의 핵심부품인 유압실린더는 국내외적으로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디와이파워주식회사의 유압실린더의 적용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쟁사의 저가 판매 등이 일시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구매 요인으로 가격, 품질, A/S 대응이 있습니다. 당사는 총판대리점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신속한 A/S대응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골프카 제어 및 기타 원천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차별화 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가) 영업개황

#### ■ 지주사업



당사는 2014.12.03일을 지주회사 전환 신고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제출하였으며, 2015.02.16일 전환 신고일 현재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지주사업의 주수익원은 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수익, 임대수익, 브랜드로열티, 경영자문수수료 및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자회사 경영활동 및 영업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지주사업의 매출은 11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당해 사업년도말 기준 계열회사 계통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회사	과투자회사	DY	DY POWER	DY AUTO	Dongyang Mechatronics Jiangyin	DY POWER INDIA	Dongyang Mechatronics China	Dongyang Mechatronics Yancheng	DY AUTO INDIA	DY AUTO MEXICO	에머리메스 테크놀로지	나누리	DY AMERICA	DY JAPAN	포스트 포해틱스	다와이퍼스
대주주 등		4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
계열회사		4%	3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	75%	100%	100%	0%	44%
	DY	4%	38%	100%									100%	100%		
	DY POWER				100%	100%										
	DY AUTO						100%	100%	100%	100%	99%	75%				44%

### ■ DY사업부문

DY사업부문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838억원의 매출을 달성 하였습니다. 내수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5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24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콘크리트펌프카 부문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중동 불안 등 세계경제 성장 하락에 따른 주요 시장 판매 감소, 브랜드간 경쟁 심화로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수판매 확대 및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을 확대하여 판매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직진식 크레인 부문은 안전법규 강화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판매가 감소하였지만, 자가용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고정식 전용 장비 확대 및 종적 확대를 위한 트럭크레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출은 러시아 시장 회복으로 전년 대비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내수는 7톤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수출은 러시아 등 주요 시장 사업 재건 및 딜러 역량 강화를 통해 판매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세차기 부문은 최저임금 인상, 주유소간 유류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시장은 전국 세차기 주유소 감소에 따라 소폭 축소가 예상되며, 제품의 안정화 및 A/S 대응력 강화에 집중하여 고객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교체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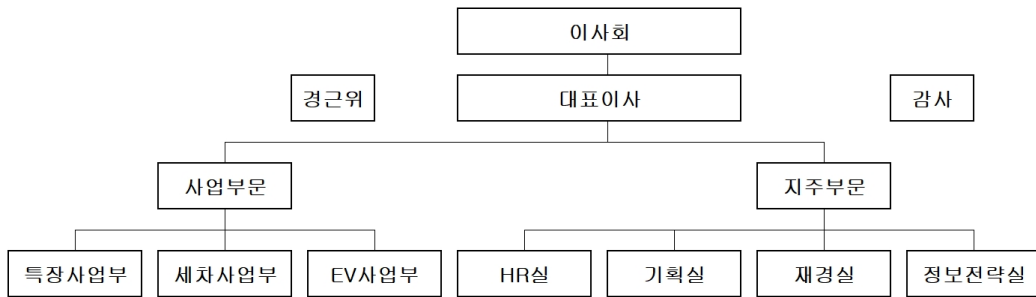
골프카 부문은 전반적인 내수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신규 골프장 보다는 기존 보유 골프카의 교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실적은 탁월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실적을 내었습니다. 향후에도 판매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나아갈 것이며 유틸리티 등 유관 사업으로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주요재화 및 용역	매출액(억원)	비고
지주사업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113	-
산업기계사업부문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카고크레인, 골프카 등 일반기계, 건설기계,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	838	-

(\*1) 상기 매출액은 2019.12.31일 기준 당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수치임

(2)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세 내용은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을 참조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제 42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유동자산	42,614	49,951
현금및현금성자산	12,071	12,97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341	15,879
재고자산	16,279	19,991
기타자산	923	1,103
비유동자산	183,976	179,11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9	249
종속기업투자자산	157,415	151,820
기타금융자산	1,434	1,369
유형자산	21,337	22,537
무형자산	3,408	3,109
기타자산	23	27
<b>자산총계</b>	<b>226,590</b>	<b>229,062</b>
유동부채	9,383	9,08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076	5,541
리스부채	247	-
차입금	388	775
기타유동부채	2,097	2,763
당기법인세부채	22	5

기타금융부채	20	-
총당부채	533	-
비유동부채	3,303	4,518
리스비유동부채	107	-
차입금	-	38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1	-
총당부채	551	927
순확정급여부채	2,594	3,204
<b>부채총계</b>	<b>12,686</b>	<b>13,602</b>
자본금	13,160	13,160
기타불입자본	91,429	91,428
이익잉여금	109,315	110,872
<b>자본총계</b>	<b>213,904</b>	<b>215,460</b>
<b>자본과부채총계</b>	<b>226,590</b>	<b>229,062</b>

(2)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제 42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b>매출액</b>	<b>95,067</b>	<b>107,664</b>
매출원가	(73,362)	(87,485)
매출총이익	21,705	20,179
판매비와관리비	(18,932)	(20,708)
<b>영업이익(손실)</b>	<b>2,773</b>	<b>(529)</b>
기타영업외수익	569	918
기타영업외비용	(734)	(1,231)
금융이익	265	674
금융원가	(95)	(24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778	(417)
법인세비용	(170)	(6,312)
<b>보고기간 당기순이익(손실)</b>	<b>2,608</b>	<b>(6,729)</b>
<b>기타포괄손익</b>	<b>(358)</b>	<b>(518)</b>
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58)	(51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58)	(518)
<b>당기총포괄이익(손실)</b>	<b>2,250</b>	<b>(7,247)</b>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원)	103	(265)
-----------------	-----	-------

(3) 별도 자본변동표

< 별도 자본변동표 >

제 42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소 계		
2018.01.01(전기초)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21,165	225,754
배당금지급	-	-	-	-	-	(3,046)	(3,046)
당기순이익	-	-	-	-	-	(6,729)	(6,729)
기타포괄손익	-	-	-	-	-	(518)	(518)
2018.12.31(전기말)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10,872	215,461
2019.01.01(당기초)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10,872	215,461
배당금지급	-	-	-	-	-	(3,807)	(3,807)
당기순이익	-	-	-	-	-	2,608	2,608
기타포괄손익	-	-	-	-	-	(358)	(358)
2019.12.31(당기말)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09,315	213,904

(4) 별도 현금흐름표

< 별도 현금흐름표 >

제 42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b>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11,202</b>	<b>1,415</b>
당기순이익	2,608	(6,729)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6,738	12,788
운전자본 변동	1,811	(4,875)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45	231
<b>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7,214)</b>	<b>(5,138)</b>
<b>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4,881)</b>	<b>(4,134)</b>
<b>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b>	<b>(893)</b>	<b>(7,857)</b>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2,978	20,877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14)	(42)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2,071	12,978

(5)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42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0.03.27)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19.03.22)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b>미처분이익잉여금</b>	<b>2,317</b>	<b>(6,911)</b>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6	336
당기순이익	2,608	(6,72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58)	(518)
<b>임의적립금이입액</b>	<b>2,000</b>	<b>11,100</b>
임의적립금	2,000	11,100
<b>이익잉여금처분액</b>	<b>3,807</b>	<b>4,122</b>
이익준비금	-	315
기타불입자본금 보전	-	-
기타적립금	-	-
배당금	3,807	3,807
주당배당금(률) :	-	-
당기-보통주 : 150원(30%)	-	-
전기-보통주 : 150원(30%)	-	-
<b>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b>	<b>509</b>	<b>66</b>

(6)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당사의 개요

디와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8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 30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10월 24일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을 분할일로 하여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디와이 주식회사와 유압기계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파워 주식회사,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오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12월 1일자로 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상호를 "동양기전주식회사"에서 "디와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할 이후 디와이파워 주식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식수를 현물출자 대상주식으로 하여 공개매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696천주이며, 그 결과 자본금이 2,84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의 자본금은 13,160백만원(26,320천주)이며, 당사의 주주는 조병호 39.39%와 기타 법인 및 개인주주 60.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 2.2.1 당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당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리스 기준에 따른 재분류와 조정은 2019년 1월 1일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채택에 따라 인식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과 목	2019년1월1일		
	변경전	조정사항	변경후
자산			
비유동자산	179,111,521	565,540	179,677,061
유형자산	22,536,906	565,540	23,102,446
자산총계	229,062,453	565,540	229,627,993
부채			
유동부채	9,083,382	266,045	9,349,427
리스부채(유동)	-	266,045	266,045
비유동부채	4,518,353	299,495	4,817,848

리스부채(비유동)	-	299,495	299,495
부채총계	13,601,736	565,540	14,167,276
자본			
자본총계	215,460,717	-	215,460,717
부채와자본총계	229,062,453	565,540	229,627,993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으로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3.34%입니다.

#### 1) 실무적 간편법의 사용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인지에 대한 종전 평가에 의존한 사용권자산의 손상검토 - 최초 적용일 현재 손실부담계약은 없습니다.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결정에 사후판단 사용

또한 회사는 최초 적용일 현재 계약이 리스에 해당하는지 또는 리스가 내재되었는지를 재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초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 2) 리스부채의 측정

(단위 : 천원)

내 용	당기초
전기말의 운용리스약정	485,533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468,471
(차감):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
(차감):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소액자산리스료	(6,069)
가산(차감):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차이로 인한 조정	103,138
최초 적용일 현재 인식된 리스부채	565,540
인식된 리스부채의 유동분류	
유동 리스부채	266,045
비유동 리스부채	299,495
합 계	565,540



### 3) 사용권자산의 측정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미지급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조정이 요구되는 손실부담리스는 없었습니다.

### 4)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6) 연차개선 2015-2017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

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2.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당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4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 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5 외화환산

###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

로 표시돼 있습니다.

##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 2.6 금융자산

###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 ①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

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 수익'에 포함됩니다.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 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2)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0 참조)

##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건축물	20년
기계장치	10~15년
공구와기구	5~10년
비품	4~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

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 2.13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연구 및 개발원가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산업재산권	5~10년

###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 2.16 금융부채

####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2.17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총당금
-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2.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2.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 2.20 종업원급여

###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2.21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세차기,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굴프카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있습니다.

###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① 제품 및 부품 판매, ②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③ 기타 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 (2)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이행한 각 수행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의 인식

재화 판매에 대한 수익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특정한 위치에 선적하고, 고객이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기타용역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2.22 리스

주석 2.2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는 리스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기말 현재 당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기타단기채무 또는 기타장기채무에 포함하였습니다



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당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소액리스자산은 사무용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 2.2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12일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연결 대 차 대 조 표 (재 무 상 태 표) >

제 42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유동자산	403,844	412,880
현금및현금성자산	75,732	53,78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7,150	186,240
재고자산	109,306	121,776
기타금융자산	23,655	32,110
기타자산	15,921	18,003
당기법인세자산	2,080	967
비유동자산	350,695	329,65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72	481
유형자산	334,079	307,719
무형자산	5,833	10,193
기타금융자산	7,387	7,334
기타자산	31	28
관계기업투자	548	-
이연법인세자산	2,345	3,897
<b>자산총계</b>	<b>754,539</b>	<b>742,532</b>
유동부채	214,512	215,05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2,146	109,131
리스부채	1,297	-
차입금	78,899	89,014
기타금융부채	82	-
기타유동부채	13,003	12,726
총당부채	16,399	-
당기법인세부채	2,686	4,185
비유동부채	65,698	81,63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39	274
리스부채	1,682	-
차입금	48,167	57,15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7
기타비유동부채	-	1,696
총당부채	3,092	9,112
순확정급여부채	8,959	8,451
이연법인세부채	3,359	4,910
<b>부채총계</b>	<b>280,210</b>	<b>296,690</b>
지배기업지분	353,964	339,731
자본금	13,160	13,160
기타불입자본	86,621	86,622
이익잉여금	260,618	248,719
기타자본구성요소	(6,435)	(8,770)
비지배지분	120,365	106,111
<b>자본총계</b>	<b>474,329</b>	<b>445,842</b>
<b>부채와자본총계</b>	<b>754,539</b>	<b>742,532</b>

(2)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42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b>매출액</b>	<b>854,259</b>	<b>891,002</b>
매출원가	(749,581)	(791,895)
매출총이익	104,678	99,107
판매비와관리비	(60,579)	(52,769)
<b>영업이익</b>	<b>44,099</b>	<b>46,338</b>
기타영업외수익	12,840	12,539
기타영업외비용	(5,617)	(11,066)
금융이익	6,074	4,862
금융원가	(11,994)	(11,772)
관계기업투자손익	51	-
<b>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b>	<b>45,453</b>	<b>40,901</b>
법인세비용	(13,391)	(18,231)
<b>당기순이익</b>	<b>32,062</b>	<b>22,670</b>
기타포괄손익	1,608	(5,07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965)	(3,34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952)	(3,345)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	(1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573	(1,732)
해외사업환산손익	2,573	(1,732)
당기총포괄이익	33,670	17,593
<b>당기순이익의 귀속</b>	<b>32,062</b>	<b>22,670</b>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6,409	5,966
비지배지분	15,653	16,704
총포괄이익의 귀속	33,670	17,593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8,041	1,273
비지배지분	15,629	16,32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원)	646	235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원)	646	235

### (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제 42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소계				
<b>2018.01.01(전기초)</b>	<b>13,160</b>	<b>95,793</b>	<b>(9,172)</b>	<b>86,622</b>	<b>248,595</b>	<b>(7,422)</b>	<b>91,577</b>	<b>432,532</b>
배당금의 지급	-	-	-	-	(3,046)	-	(1,238)	(4,283)
당기순이익	-	-	-	-	5,965	-	16,704	22,670
순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	-	-	-	(2,796)	-	(549)	(3,34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348)	(384)	(1,732)
<b>2018.12.31(전기말)</b>	<b>13,160</b>	<b>95,793</b>	<b>(9,172)</b>	<b>86,622</b>	<b>248,719</b>	<b>(8,770)</b>	<b>106,111</b>	<b>445,842</b>
<b>2019.01.01(당기초)</b>	<b>13,160</b>	<b>95,793</b>	<b>(9,172)</b>	<b>86,622</b>	<b>248,719</b>	<b>(8,770)</b>	<b>106,111</b>	<b>445,842</b>
배당금의 지급	-	-	-	-	(3,807)	-	(1,375)	(5,182)
당기순이익	-	-	-	-	16,409	-	15,653	32,062
순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	-	-	-	(702)	-	(250)	(95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2,347	226	2,573
지분법자본변동	-	-	-	-	-	(13)	-	(13)
<b>2019.12.31(당기말)</b>	<b>13,160</b>	<b>95,793</b>	<b>(9,172)</b>	<b>86,622</b>	<b>260,618</b>	<b>(6,435)</b>	<b>120,365</b>	<b>474,329</b>

### (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제 42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759	53,191
당기순이익	32,062	22,670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64,181	67,155
운전자본 변동	1,222	(22,763)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17,706)	(13,87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304)	(60,69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485)	(33,440)
<b>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b>	<b>21,970</b>	<b>(40,940)</b>
<b>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b>	<b>53,784</b>	<b>94,385</b>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23)	339
<b>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b>	<b>75,731</b>	<b>53,784</b>

(5) 연결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디와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8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30일에 당사의 주식을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투자사업 및 산업기계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익산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 4개 종속기업과 미국 등 8개의 해외종속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10월 24일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을 분할일로 하여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디와이 주식회사와 유압기계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파워 주식회사,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오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12월 1일자로 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상호를 "동양기전주식회사"에서 "디와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할 이후 디와이파워 주식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식수를 현물출자 대상주식으로 하여 공개매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696천주(자본금 2,848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3,160백만원(26,320천주)이며, 당사의 주주는 조병호 39.39%와 기타법인 및 개인주주 60.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리스 기준에 따른 재분류와 조정은 2019년 1월 1일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채택에 따라 인식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과 목	2019년1월1일		
	변경전	조정사항	변경후
자산			
비유동자산	329,652,111	3,554,817	333,206,928
유형자산	307,718,613	8,033,341	315,751,954
무형자산	10,192,646	(4,478,524)	5,714,122
자산총계	742,531,917	3,554,817	746,086,734
부채			
유동부채	215,056,663	1,486,025	216,542,688
리스부채(유동)	-	1,486,025	1,486,025
비유동부채	81,633,716	2,068,792	83,702,508
리스부채(비유동)	-	2,068,792	2,068,792
부채총계	296,690,379	3,554,817	300,245,196
자본			
자본총계	445,841,538	-	445,841,538
부채와자본총계	742,531,917	3,554,817	746,086,734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으로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2.80%입니다.

### 1) 실무적 간편법의 사용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인지에 대한 종전 평가에 의존한 사용권자산의 손상검토 - 최초적용일 현재 손실부담계약은 없습니다.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결정에 사후판단 사용

또한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 현재 계약이 리스에 해당하는지 또는 리스가 내재되었는지를 재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초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 2) 리스부채의 측정

(단위 : 천원)

내 용	당기초
전기말의 운용리스 약정	2,944,191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 할인액	2,774,299
(차감):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소액자산리스료	(153,610)
가산(차감):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차이로 인한 조정	936,541
최초 적용일 현재 인식된 리스부채	3,557,230
인식된 리스부채의 유동분류	
유동 리스부채	1,511,176
비유동 리스부채	2,046,053
합 계	3,557,230

### 3) 사용권자산의 측정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미지급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조정이 요구되는 손실부담리스는 없었습니다.



#### 4)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 처리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6) 연차개선 2015-2017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2.3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연결실체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4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실체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시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 2.5 외화환산

###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 2.6 금융자산

###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3 참조)

####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건물과 구축물에 대해서는 18~50년을, 그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4년~2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 2.13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4 (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연구 및 개발원가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산업재산권	5~10년

####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 2.16 금융부채

#####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 2.19 종업원급여

### (1)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2.20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이 주문한 산업기계 및 유압기기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1) 제품 및 부품 판매, (2)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3) 기타 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 (2)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이행한 각 수행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의 인식

재화 판매에 대한 수익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특정한 위치에 선적하고, 고객이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기타용역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2.21 리스

주석 2.2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결실체는 리스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기타단기채무 또는 기타장기채무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소액리스자산은 사무용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 2.23 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12일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2 기	제 41 기
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150원	150원
	배당금총액	3,807백만원	3,807백만원
	액면배당률	30%	30%
	시가배당률	2.6%	2.6%

(\*1) 제42기 현금배당은 제42기 정기주주총회(2020.03.27. 예정) 승인 사안임.

##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창순	1959.02.25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창순	(현) 디와이 감사	2006.04 ~ 2010.08 2010.09 ~ 2017.01 2017.03 ~ 현재	- 포스코 원가 그룹장 등 - 포스코대우 CFO - 디와이 감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창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창순 후보는 전직장 및 현직장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감시장치 운영 현황 점검 등 감사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업무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감사 경험을 통해 충실한 감사 운영의 책임자로 판단되어 재추천함.

## 확인서

##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및 라목, 바목 및 사목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4일

보고자 : 이창순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명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9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91백만원
최고한도액	900백만원

(\*1) 2019년 09월 30일 박인철 사내이사는 중도사임함.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3백만원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규정 일부 변경

나. 의안의 요지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5조 (퇴직금 지급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재임 매일년에 대 도표와 같이 시행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직 위</th> <th>지 급 기 준 율</th> </tr> </thead> <tbody> <tr> <td>회장, 부회장, 사 장</td> <td>재임기간 1년당 3</td> </tr> <tr> <td>부사장, 전무이사</td> <td>재임기간 1년당 2.5</td> </tr> <tr> <td>상무이사, 이사, 감사</td> <td>재임기간 1년당 2</td> </tr> </tbody> </table>	직 위	지 급 기 준 율	회장, 부회장, 사 장	재임기간 1년당 3	부사장, 전무이사	재임기간 1년당 2.5	상무이사, 이사, 감사	재임기간 1년당 2	<p>제5조 (퇴직금 지급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재임 매일년에 대 도표와 같이 시행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직 위</th> <th>지 급 기 준 율</th> </tr> </thead> <tbody> <tr> <td>회장, 부회장, 사 장</td> <td>재임기간 1년당 3</td> </tr> <tr> <td>부사장, 전무이사</td> <td>재임기간 1년당 2.5</td> </tr> <tr> <td>상무이사, 이사</td> <td>재임기간 1년당 2</td> </tr> <tr> <td>감사</td> <td>재임기간 1년당 1</td> </tr> </tbody> </table>	직 위	지 급 기 준 율	회장, 부회장, 사 장	재임기간 1년당 3	부사장, 전무이사	재임기간 1년당 2.5	상무이사, 이사	재임기간 1년당 2	감사	재임기간 1년당 1	<p>임원퇴직금지 규정 상 '감사' 의 퇴직금 지급 률을 조정</p>
직 위	지 급 기 준 율																			
회장, 부회장, 사 장	재임기간 1년당 3																			
부사장, 전무이사	재임기간 1년당 2.5																			
상무이사, 이사, 감사	재임기간 1년당 2																			
직 위	지 급 기 준 율																			
회장, 부회장, 사 장	재임기간 1년당 3																			
부사장, 전무이사	재임기간 1년당 2.5																			
상무이사, 이사	재임기간 1년당 2																			
감사	재임기간 1년당 1																			
(신 설)	<p>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p>	개정시행일																		

##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크레인, 골프카 등 일반기계, 건설기계,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산업기계 사업부문(이하"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의 분리를 통해 지주회사로서 위상과 지주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2)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급격한 시장환경 및 규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분할 내용 요약]

구분	상호	사업부분	비고	상장여부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디와이주식회사	투자, 임대, 지주사업	지주회사	상장
물적분할신설회사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가칭)	산업기계	사업회사	비상장

(\*1)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나. 분할 계획서 주요내용의 요지

###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1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20년 5월 1일(0시)로 한다.

(3)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문 중 「3.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 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만약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5)항 내지 제(9)항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관련 세부사항은 분할계획서 본문 및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2. 분할 일정

구분	일자
분할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0. 03. 09.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19. 12. 3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0. 03. 27.
분할기일	2020. 05. 01.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0. 05. 04.
분할등기(예정)일	2020. 05. 07.

- (\*1) 상기 일정은 주요 일정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 주주와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 예정임.

###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등

		내 용
상호	한글명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 (가칭)
	영문명	DY INNOVATE Corporation (가칭)
목적		1.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3.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4.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업 7.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업 8. 건설기계, 특장차의 임대업 9. 부동산 임대업 10.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11. 기계장비 제조업 12.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 공사업 13.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14. 자동차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5.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6.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17.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8.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1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본점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3길 118 (팔봉동)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innovate.dy.co.kr">http://innovate.dy.co.kr</a> ).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함.
결산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임.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1) 상호, 사업 목적, 공고 방법 등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1주의 금액 500원)

####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등

구 분	내 용
-----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0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보통주 4,000,000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1주의 금액 500원)

**(4)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보통주4,000,000주)를 분할되는 회사에100% 배정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자본금	자본금 2,000,000,000원
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33,470,421,842원

(\*1) 준비금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 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할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별첨1]분할채무상대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채무상대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하되 세부 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 ④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등록 또는 출원 유무를 불문하며, 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 분할기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2020년 5월 1일(0시)을 분할기일로 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①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 위	성명	생년월일	약력	비고
사내이사	김 지 현	590823-1	'10.04~'14.11 동양기전 유압기기사업부장 '14.12~현재 디와이파워 대표이사 '19.03~현재 디와이 대표이사	신규선임
사내이사	이 승 창	630708-1	'10.04~'14.11 동양기전 유압기기 영업부문장 '14.12~'15.06 디와이파워 영업총괄임원 '15.07~현재 디와이 사업부문 총괄임원	신규선임
사내이사	김 진 호	690814-1	'10.04~'14.11 동양기전 경영기획팀장 '14.12~'15.03 디와이 전략기획팀장 '15.04~현재 디와이 기획실장	신규선임
감사	이 창 순	590225-1	'06.04~'10.08 포스코 원가 그룹장 등 '10.09~'17.01 포스코대우 CFO '17.03~현재 디와이 감사	신규선임

(\*1) 임원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됨.

(\*2) 임원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구분	보수한도액	비고
이 사	750백만원	-
감 사	150백만원	-

(\*1)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분할신설회사 이사회에서 정함.

(\*2) 분할신설회사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은 [별첨4]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함(단, 동 규정의 시행일자는 분할신설회사 설립일자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3]과 같다. 다만 [별첨3]분할신설회사 정관의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할 수 있다.



#### 4.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본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아니한다.

##### (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문 중 「3.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에 따른다.

#####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변동이 없음.

#####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	----

<p><b>제2조 (목적)</b></p> <p>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li> <li>2.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li> <li>3.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li> <li>4.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li> <li>5.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li> <li>6.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업</li> <li>7.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 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li> <li>8. 부동산 임대업</li> <li>9.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li> <li>10. 기계장비 제조업</li> <li>11.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 공사업</li> <li>12.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li> <li>13. 자동차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li> <li>14.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li> <li>15.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li> <li>16.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li> <li>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li> <li>18.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li> <li>19.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li> <li>20.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li> <li>21.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사업</li> <li>22.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li> <li>23.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li> <li>2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li> </ol>	<p><b>제2조 (목적)</b></p> <p>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li> <li>2.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li> <li>3.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li> <li>4.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사업</li> <li>5.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li> <li>6.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li> <li>7. 부동산 임대업</li> <li>8.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li> <li>9.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li> <li>10.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li> <li>1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li> </ol>	<p>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관한 사업목적 삭제</p>
<p>(신설)</p>	<p><b>부 칙</b></p> <p><b>제1조 (시행일)</b> 이 정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변경시행일</p>

## 5. 기타 분할과 관련된 사항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 제3자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1)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 2) 분할일정
-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4)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 5)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6)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7)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 (3)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 (4)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 (5)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 (7) 기타

- ①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② 분할보고총회 및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상법 제530조의7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한다.

다.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2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디와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당)기말		제 41 (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403,844		412,880
1. 현금및현금성자산	75,731		53,784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7,151		186,240	
3. 재고자산	109,306		121,776	
4. 기타금융자산	23,655		32,110	
5. 기타자산	15,921		18,003	
6. 당기법인세자산	2,080		967	
II. 비유동자산		350,695		329,652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72		481	
2. 유형자산	334,079		307,719	
3. 무형자산	5,833		10,193	
4. 기타금융자산	7,387		7,334	
5. 기타자산	31		28	
6. 관계기업투자	548		-	
7. 이연법인세자산	2,345		3,897	
자산총계		754,539		742,532
부채				
I. 유동부채		214,512		215,05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2,145		109,131	
2. 리스부채	1,298		-	
3. 차입금	78,898		89,014	
4. 기타금융부채	83		-	
5. 기타유동부채	13,003		12,726	
6. 총당부채	16,399		-	
7. 당기법인세부채	2,686		4,185	
II. 비유동부채		65,698		81,63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39		274	
2. 리스부채	1,682		-	
3. 차입금	48,167		57,154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7	
5. 기타비유동부채	-		1,696	
6. 총당부채	3,092		9,112	

7.순확정급여부채	8,959		8,451	
8.이연법인세부채	3,359		4,910	
부채총계		280,210		296,690
자본				
I.지배회사지분		353,964		339,731
1.자본금	13,160		13,160	
2.기타불입자본	86,622		86,622	
3.이익잉여금	260,617		248,719	
4.기타자본구성요소	(6,435)		(8,770)	
II.비지배지분		120,365		106,111
자본총계		474,329		445,842
부채와자본총계		754,539		742,532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디와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I.매출액		854,259		891,002
II.매출원가		(749,581)		(791,895)
III.매출총이익		104,678		99,107
IV.판매비와관리비	(60,579)		(52,769)	
V.영업이익		44,099		46,338
기타영업외수익	12,840		12,539	
기타영업외비용	(5,618)		(11,066)	
금융이익	6,074		4,862	
금융원가	(11,994)		(11,772)	
관계기업투자손익	52		-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453		40,901
VII.법인세비용	(13,391)		(18,231)	
VIII.당기순이익		32,062		22,670
IX.기타포괄손익		1,608		(5,076)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965)		(3,34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952)		(3,344)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	(13)		-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573		(1,732)
해외사업환산손익	2,573		(1,732)	
X.당기총포괄이익		33,670		17,593
당기순이익의 귀속		32,062		22,67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6,409		5,966	
비지배지분	15,653		16,704	

총포괄이익의 귀속		33,670		17,593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8,041		1,273	
비지배지분	15,629		16,32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46원		235원

## 2. 별도재무제표

### (1) 별도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제 42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디와이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2 (당)기말		제 41 (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42,614		49,951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071		12,978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341		15,879	
3. 재고자산	16,279		19,991	
4. 기타자산	923		1,103	
II. 비유동자산		183,976		179,111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9		249	
2. 종속기업투자자산	157,415		151,821	
3. 기타금융자산	1,434		1,369	
4. 유형자산	21,337		22,537	
5. 무형자산	3,408		3,108	
6. 기타자산	23		27	
자산총계		226,590		229,062
부채				
I. 유동부채		9,382		9,08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076		5,541	
2. 리스부채	247		-	
3. 차입금	387		775	
4. 기타유동부채	2,097		2,763	
5. 당기법인세부채	22		5	
6. 기타금융부채	20		-	
7. 총당부채	533		-	
II. 비유동부채		3,304		4,518
1. 리스비유동부채	107		-	
2. 차입금	-		387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2		-	

4.총당부채	551		927	
5.순확정급여부채	2,594		3,204	
부채총계		12,686		13,602
자본				
I.자본금	13,160		13,160	
II.기타불입자본	91,429		91,429	
III.이익잉여금	109,315		110,872	
자본총계		213,904		215,460
자본과부채총계		226,590		229,062

(2)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디와이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42 (당)기		제 41 (전)기	
I.매출액		95,067		107,664
II.매출원가		(73,362)		(87,485)
III.매출총이익		21,705		20,179
IV.판매비와관리비	(18,932)		(20,708)	
V.영업이익(손실)		2,773		(529)
기타영업외수익	569		918	
기타영업외비용	(733)		(1,231)	
금융이익	264		674	
금융원가	(95)		(249)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778		(417)
VII.법인세비용	(170)		(6,312)	
VIII.보고기간 당기순이익(손실)		2,608		(6,729)
IX.기타포괄손익		(358)		(518)
당기순이익으로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58)		(51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58)		(518)	
X.당기총포괄이익(손실)		2,250		(7,247)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103원		(265)원

※ 기타 참고사항

분할계획서 및 본 분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2020년 03월 09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자산			
Ⅰ. 유동자산	42,614	13,292	29,322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071	12,071	-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341	1,173	12,168
3. 재고자산	16,279	-	16,279
4. 기타유동자산	923	48	875
Ⅱ. 비유동자산	183,976	202,931	16,515
1.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9	51	307
2. 종속기업투자	157,415	192,886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00	1,100	-
4. 기타금융자산	334	204	130
5. 유형자산	21,337	5,452	15,885
6. 무형자산	3,408	3,238	170
7. 기타비유동자산	23	-	23
8. 이연법인세자산	-	-	-
자산총계	226,590	216,223	45,837
부채			
Ⅰ. 유동부채	9,382	1,234	8,149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076	556	5,520
2. 리스부채	247	27	220
3. 차입금	387	-	388
4. 기타유동부채	2,097	609	1,488
5. 당기법인세부채	22	22	-
6. 기타금융부채	20	20	-
7. 총당부채	533	-	533
Ⅱ. 비유동부채	3,304	1,086	2,218
1. 리스비유동부채	107	12	95
2. 비유동차입금	-	-	-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2	52	-
4. 총당부채	551	93	458
5. 순확정급여부채	2,594	929	1,665
부채총계	12,686	2,320	10,367
자본			
Ⅰ. 자본금	13,160	13,160	2,000
Ⅱ. 자본잉여금	100,601	100,601	33,470
Ⅲ. 자본조정	(9,172)	(9,172)	-



IV.이익잉여금	109,315	109,315	-
V.기타자본구성요소	-	-	-
자본총계	213,904	213,904	35,470
부채와자본총계	226,590	216,223	45,837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정과목	금액
유동자산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외상매출금	11,971
		미수금	57
		대여금	4
		리스채권	136
	재고자산	재고자산	16,279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228
		선급비용	346
기타유동자산		301	
유동자산 소계			29,322
비유동자산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	12
		리스채권	295
	기타금융자산	임차보증금	130
	유형자산	토지(*1)	4,927
		건물(*2)	7,615
		구축물	475
		기계장치	1,837
		차량운반구(*3)	115
		공기구비품	609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307
	무형자산	특허권	41
		의장권	3
		상표권	-
		소프트웨어	120
		기타의무형자산	2
		건설중인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비용	23	
비유동자산 소계			16,515
자산 합계			45,837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외상매입금	3,761
		미지급금	1,359
		예수보증금	240
		미지급비용	161
		리스부채	220

	차입금	차입금	388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348
		예수금	197
		미지급비용(급여)	589
		부가세납부금	95
		선수수익	243
		이연수익	15
	총당부채	총당부채	533
유동부채 소계			8,149
비유동부채	비유동기타채무	리스부채	95
	총당부채	판매보증총당금	129
		총당부채	329
	종업원급여부채	순퇴직급여부채 등	1,665
비유동부채 소계			2,218
부채 합계			10,367

(\*1)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취득일자
1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	1991-12-30
3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69	1995-11-30

(\*2) 건물현황

번호	명칭	소재지	취득일자
1	2공장 1동(공장,5,302.5㎡)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2	2공장 사무동(2,158.16㎡)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3	2공장 경비실(31.68㎡)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4	2공장 변전실(144㎡)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5	2공장 공푸레샤실(20㎡)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6	2공장 기계실2(60㎡)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7	2공장 고철장 및 위험물창고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8-02-27
8	2공장 기계실1(125㎡)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9	절단장,SHOT장,도장장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5-07-28
10	사무동 5,279.18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2016-01-31
11	3공장 3,265.9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7-03-31
12	1공장6,085.8m2(48.6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2-11-20
13	위험물창고 (144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3-04-23
14	2공장 8,061.1m2(622.1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4-06-18

15	대형장비 도장건물(I동)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2012-03-02
16	J동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2017-03-06
17	골프카 보관창고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2018-03-21
18	동신 APT 101동 1106호(21평)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동신아파트 101동 1106호	1993-11-17

(\*3) 차량운반구

번호	명칭	차량등록번호
1	현대포터2골드	94루 1869
2	그랜드스타렉스_85도2280_김철희	85도 2280
3	그랜드스타렉스_안종일	92모 8861
4	그랜드스타렉스_백준	92모 8821
5	그랜드스타렉스_소경삼	92모 8845
6	코란도스포츠(특장AS용)	84모 1060
7	코란도스포츠(특장AS용)	87더 6071
8	현대포터 II(특장AS용)	82마 6665
9	포터 II 윈바디(전동식) 초장축 슈퍼캡 스마트 A/T	91수 4223
10	3번 스타렉스(AS용)	83러 1894
11	그랜드 스타렉스3번_부산_87주0253	87주 0253
12	그랜드 스타렉스3번_서울_87주0293	87주 0293
13	누비라II (1.5DOH) 2088	48머 6206
14	이스타나-롱6밴(95마5069)	95마 5069
15	Battery Fork Lift(골프카)	-
16	아반테(62러5278) 세차테스트차량	62러 5278
17	트럭 25Ton 대우	81주 2944
18	세차완성TEST차량(트라제XG)	48고 3171
19	그랜드스타렉스_85도2204	85도 2204

## [별첨 3] 분할신설회사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라 말하며, 영문으로는 DY INNOVATE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3.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4.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
7.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 기계의 매매, 정비 및 대여업
8. 건설기계, 특장차의 임대업
9. 부동산 임대업
10.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11. 기계장비 제조업
12.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 공사업
13.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14. 자동차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5.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6.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17.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8.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1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innovate.dy.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20,000,000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주배당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 (본 회사의 등기이사를 제외한다)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등기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규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의 4 (주식의 소각)

-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 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준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의 2 (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 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15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발행 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음.

#####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3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사채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사채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사채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사채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채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8조 (소집기간)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모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 회사가 당사를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제29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최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하는 집중투표제의 표결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때는 각자 대표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3 (경영임원)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③ 경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경영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 4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1. 타 회사가 당해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할 경우 (내·외국인 포함)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3.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사채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요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4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계 산

제43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는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 ①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공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6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의2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7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제1조 (제정시행일) 이 정관은 분할 주주총회 승인 후, 분할기일(2020년 5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는 분할전 회사 디와이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이 분할로 인하여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기액 등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27일(예정) 분할전 회사 디와이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사업년도는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발기인) 이 회사는 분할전 회사 디와이주식회사에서 산업기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발기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분할전 회사의 명칭)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전 회사 디와이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별첨 4]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법 제388조, 정관 제41조 제2항 및 제35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하 동일)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등기임원 :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로써,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되어 있는 사내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② 경영임원 : 정관 제35조의3에서 정한 자로써,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경영 목적상 상기 제1항의 등기임원과 동등한 직위를 가지고 사실상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이상의 임원을 말한다.

##### 제3조 (퇴직시기)

임원의 퇴직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 제4조 (퇴직금 산출방법)

- ①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1년 이상이 된 자가 사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 ②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와 제5조의 퇴직금 지급률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 (퇴직금 지급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재임 매일년에 대해 도표와 같이 시행한다.

직 위	지 급 기 준 율	비 고
회장.부회장.사장	재임기간 1년당 3	
부사장,전무이사	" 2.5	
상무이사,이사	" 2	
감사	" 1	

##### 제6조 (재임기간의 산정)

- ① 재임기간은 최초로 임원에 선임된 날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재임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 제7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 (개 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분할 주주총회 승인 후, 분할기일(2020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

##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예정일 : 2020. 3. 27. (금)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연결대상 국내 및 해외 자회사들의 결산 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한 날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한테 위임하고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디지털 온도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들께서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